

| | |
|--------------|--------------------------|
| 의안번호 | 제 223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08. 4. . (제 269회)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 | |
|-------|-------------|
| 발 의 자 | 이필용 의원 외 6인 |
| 발의연월일 | 2008년 4월 7일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23 |
|----------|-----|

발의년월일 : 2008년 4월 7일
제 안 자 :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연만흠, 김환동, 조영재
이종호 (7인)

1. 제안이유

충청북도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규정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다 활발한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시책을 발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제안의 종류(안 제3조, 안 제4조)
 - 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12조)
 - 다. 채택여부의 결정(안 제18조)
 - 라. 창안의 등급(안 제21조)
 - 마. 창안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 (안 제22조)
 - 바. 인사상 특전 (안 제24조)
 - 사. 창안의 사후관리 (안 제27조부터 제3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제도운영상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함
- 다. 관련부서 협의 : 이견(異見) 없음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관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도민 또는 충청북도 및 시·군 소속공무원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행■■■이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도민제안, 공무원제안, 추천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1. 도민제안 :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추천제안 : 도내 시·군에서 심사 채택된 제안 또는 실행중인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제안
4.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5. 지정제안 :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 · 비판 ·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도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6조(제안의 제출) ① 도민과 충청북도 및 도내 시 · 군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자유 · 지정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천 제안은 시장 · 군수가 제출한다.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안의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유롭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제안사이트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상아이디어 모집, 상상토론의 날 운영 등 홍보행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행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충청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행, 평가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에서는 제안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제15조(수당)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당지급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6조(심사구분)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17조(심사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 제21조(창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창안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충청북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2조(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도민의 경우 최고 5백만원으로, 공무원의 경우 최고 3백만원으로 하며 창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 제24조(인사상 특전)**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도지사는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 대상자에 해당하나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군수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권고할 수 있

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6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도지사는 창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6장 창안의 사후관리

제27조(관리기간) 도지사는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 터 3년간 실행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창안이 직접 실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29조(실행의 권고) 도지사는 창안이 다른 기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실행성과의 평가) ① 창안을 실행하는 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행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법령

□ 지방 공무원법

제39조의3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78조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제78조 (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

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제안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 등의 제안)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이하□□시·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안의 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제안규정

제4조 (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